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4. . . (제 회)	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
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
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이주호 (부총리 겸 교육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4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 개정(2024.2.6.)에 따라 법률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임시교실 건축기법의 정의 및 소방시설 설치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, 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의 고시 근거 등을 명확히 하며, 사전기획의 대상을 정하는 근거 법률을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하고, 사전기획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사전기획 절차를 설계 전까지 완료하도록 하는 한편,

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법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소방시설 실태조사,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,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·운영,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·점검, 안전성평가 결과 타당성 검토 등 위탁하는 업무를 명확히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가. “임시교실”, “소방시설 설치지원”에 관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규정

(안 제3조의2, 제12조의4)

나. “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”의 고시 근거 및 기준에서 정할 세부

사항 명확화(안 제12조)

다. 교육시설통합정보망 구축·운영에 관한 고시 근거 명확화(안 제22조)

라. 사전기획 대상의 근거 법률을 「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」로 변경(안 제23조의2)

마. 사전기획 결과에 대한 적정성 검토의견의 활용계획 마련 시기 명확화(안 제23조의3)

바. 교육부장관 및 감독기관의 장이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 규정 및 조문 정비(안 제27조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4. 00. 00. ~ 00. 00.) 진행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임시교실 건축기법) 법 제2조제1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”이란 골조, 마감재, 기계 및 전기설비 등 조립식 건축물 설치에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공장에서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단순 조립·설치하는 기법을 말한다.

제11조제1항제1호 본문 중 “규정의준수”를 “규정의 준수”로 한다.

제12조에 “제2항” 및 “제3항”을 각각 “제3항” 및 “제4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.

1. 교육시설 내 실험·실습실 안전에 관한 기준
2. 교육시설 내 범죄예방, 교통안전 등에 관한 기준
3.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부장관이

인정하는 사항

- ⑤ 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12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안전·유지관리기준의 세부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2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2조의4(소방시설 설치지원 등) 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설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
1. 스프링클러설비
2. 간이스프링클러설비
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

-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
2. 「건축법」, 「건축사법」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에 필요한 비용

제22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23조의2제1항 본문 중 “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의”를

“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는 제외한다)의”로 한다.

제23조의3제4항 본문 중 “착공 전”을 “설계 전”으로 한다.

제27조에 “제1항”을 “제2항”으로 하고,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.

1.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
2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인증 운영에 관한 업무
3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합정보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

제27조제2항(종전 제1항)의 “제1호” 및 “제2호”를 각각 “제2호” 및 “제4호”로 하며,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제2호(종전의 제1호) 및 제4호(종전의 제2호) 본문 중 “자료 요청”을 각각 “보완 요청 등 필요한 조치”로 한다.

1.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·점검에 관한 업무
3.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

부 칙

이 영은 2025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 제11조(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·점검 등)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에 대한 평가·점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. 1. 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와 관련된 사항의 법 및 관계 <u>규정의준수</u> 여부 2. ~ 3. (생략) 제12조(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 등) ① (생략) <u><신 설></u>	<u>제3조의2(임시교실 건축기법) 법 제2조제11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기법”이란 골조, 마감재, 기계 및 전기설비 등 조립식 건축물 설치에 필요한 요소들을 미리 공장에서 규격화된 형태로 제작하여 현장에서 단순조립·설치하는 기법을 말한다.</u> 제11조(교육시설 관리실태 등의 평가·점검 등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. 1. ----- ----- -- <u>규정의 준수</u> 여부 2. ~ 3. (현행과 같음) 제12조(교육시설의 안전·유지관리기준 등) ① (현행과 같음) <u>②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“교육시설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</u>

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안전
· 유지관리기준의 준수 여부에
대한 점검은 매년 1회 이상 해
야 하며, 그 점검 결과를 보고할
때에는 안전·유지관리기준의
세부 항목별 준수 여부, 향후 조
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.

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보고
를 받은 감독기관의 장은 안전
· 유지관리기준의 준수에 필요
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
수 있다.

<신 설>

<신 설>

말한다.

1. 교육시설 내 실험·실습실 안
전에 관한 기준

2. 교육시설 내 범죄예방, 교통
안전 등에 관한 기준

3. 그 밖에 교육시설의 안전 및
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교육
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

③ -----

-----.

④ -----

-----.

⑤ 법 제10조제1항 및 이 영 제
12조제1항·제2항에 따른 안전·
유지관리기준의 세부 사항은 교
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

제12조의4(소방시설 설치지원 등)

① 감독기관의 장 또는 교육시

제22조(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) ①·② (생략)

<신설>

설의 장은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한다.

1. 스프링클러설비

2. 간이스프링클러설비

3.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시설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1. 소방시설 설치를 위한 공사비

2. 「건축법」, 「건축사법」 및 「소방시설공사업법」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설계 및 감리에 필요한 비용

제22조(교육시설통합정보망의 구축·운영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통합정보망의 구축·

	<u>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.</u>
제23조의2(사전기획의 대상 등)	제23조의2(사전기획의 대상 등)
① 법 제2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시설 사업”이란 「 <u>초·중등교육법</u> 」 제2조에 따른 <u>학교의</u> 시설 및 설비를 건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서 추정 설계비가 1억원 이상인 사업을 말한다.	① ----- ----- ----- <u>법 제2조제1호나목 및 마목에 따른 초·중·고등학교(「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한국학교는 제외한다)의</u> ---.
②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
제23조의3(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) ① ~ ③ (생략)	제23조의3(사전기획 결과의 적정성 검토 절차 등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④ 제3항에 따른 검토의견을 받은 초·중·고등학교의 감독기관의 장은 교육시설의 <u>착공 전</u> 까지 그 검토의견의 활용계획을 마련하여 적정성검토기관에 제출해야 한다.	④ ----- ----- ----- <u>설계 전</u> ----- -----.
⑤ ~ ⑥ (생략)	⑤ ~ ⑥ (현행과 같음)
제27조(업무의 위탁) ① <신설>	제27조(업무의 위탁) ① <u>교육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.</u>

① 감독기관의 장은 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안전원에 위탁한다. <신 설> 1.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등의 결과에 대한 평가 및 <u>자료 요청</u>에 관한 업무 <신 설> 2. 법 제2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시설안전사고의 조사 및 <u>자료 요청</u>에 관한 업무	1.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<u>소방시설 실태조사 등에 관한 업무</u> 2.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교육 <u>시설안전인증 운영에 관한 업무</u> 3.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통합 <u>정보망 구축·운영에 관한 업무</u> ② ----- ----- -----. 1. 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<u>교육시설 관리실태 평가·점검에 관한 업무</u> 2. ----- ----- <u>보완</u> <u>요청 등 필요한 조치</u>----- ----- 3.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<u>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 등 필요한 조치에 관한 업무</u> 4. ----- <u>보완 요청</u> <u>등 필요한 조치</u>----- -----
---	---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교육부 교육시설과	
연 락 처	(044) 203 - 6319